

# 꿈나무육성TF팀 운영규정

(2019.12.13)

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

꿈나무육성TF팀 규정

## 제1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미래를 열어나갈 꿈나무 선수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다.

## 제2장 팀구성

제 2조(명칭)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(이하 '협회'라 칭함) 내에 꿈나무육성팀(이하 '팀'라 칭함)을 둔다.

제 3조(구성) ① 팀은 팀장 1명과 6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팀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팀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당해 연도 꿈나무 전담지도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간사는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.

⑤ 팀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정관 제26조에 따라 본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팀원이 될 수 없다.
2.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4조(임기)

- ① 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하며 연임할 있다.
- ② 보선된 팀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5조(자격 및 권한)

1. 팀원은 본 회 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전체 또는 부분 해임할 수 있다.
2. 팀은 꿈나무선수의 육성과 관련한 업무의 권한을 갖는다.

제 6 조(위원의 직무) ① 팀장은 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팀장은 팀장을 보좌하고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팀원은 팀을 구성하고 팀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7조(보고) 회의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전달하여 결정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.

## 제3장 사업 및 임무

제 8조 팀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꿈나무선수의 동계, 하계 훈련 및 체격, 체력 측정 관련 사항
2. 꿈나무선수의 훈련 프로그램 작성
3.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꿈나무선수와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

4. 경기력향상위원회에 건의할 사항
5. 꿈나무선수의 훈련 관리 지원
6. 기타 꿈나무선수 육성에 필요한 사항

**제 9조(직무 배정)** ① 팀의 결정으로 위원에 직무를 배정할 수 있다.  
 ② 직무에 대한 결과는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임무 조정)** ① 팀과 임무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와 중복이 생기는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.  
 ②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 시 경기력향상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다.

## 제 4장 수당지급

**제11조 (수당 및 여비 지급)** TF팀원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

## 제5장 의무규정

**제12조** 팀은 협회 임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부 칙

**제 1조** 본 규정 4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제정 후 첫 위원회 팀원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**제 2조**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(2019.12.13.)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**제 3조**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운영 사항은 본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,개정 하여 진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사무처에 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.